학교폭력예방교육

백신중학교 생활안전부

Ⅰ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임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1]**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1) 학교폭력이 ‘학생 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가중 처벌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 신, 바 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따돌림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Ⅱ 학교폭력 징후 포착하기

1. 학교폭력 피해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6) 멍하게 있거나,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8)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9)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10)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11)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12) 따돌림 당한 친구 사례를 얘기 한다. 등

Ⅲ 학교폭력,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나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무엇보다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인 징계를 받게 합니다.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에게 보복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받게 됩니다.

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라. (4호) 사회봉사

○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마.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 (6호) 출석정지

○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 (7호)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 (8호) 전학

○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자. (9호) 퇴학처분

○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가 있을 경우, 위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IV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제13조 2(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1.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신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절차 폐지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행정심판법 준용)

3.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가정폭력예방교육

백신중학교 생활안전부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물려주시겠습니까?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학대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 통제, 간섭과 의심	강제 추행,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 고소에 관한 특례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합니다.

○ 가정보호사건 처리

-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행위자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 결정〉

① 접근제한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 제한 ③ 친권행사 제한
④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감호위탁 ⑦ 치료위탁 ⑧ 상담위탁

당신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112」에 신고 하세요.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 1577-1366 또는 1577-5432)
➤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피해치료 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1]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2]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3]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1]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2]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3]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4]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5]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1호~3호)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임시조치 5호(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1]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2]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3]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4] 친권행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지원제도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를 돕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보호시설(쉼터) 입소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관련 상담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중

2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지원

3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4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지원

5 주민등록 열람제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6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7 이혼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가능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 가능

가정내 아동학대,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내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 교사 직군 | 교육 보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 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 신설직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편견은 그만!

가정폭력! 당신(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할 수 있는 폭력은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나 가정폭력 피해자 일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내 이웃이 가정폭력으로 괴로워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 국번없이 「112」로 신고 하세요
- 가정폭력 상담 및 긴급피난처 제공, 보호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 1366, 이주여성은 다누리콜 ☎ 1577-1366(또는 ☎ 1577-5432)에 전화 하세요
- 학대 받은 아동을 발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에 또는 경찰(☎ 112)에 전화해 주세요

아동학대예방교육

백신중학교 생활안전부



학부모대상 학생인권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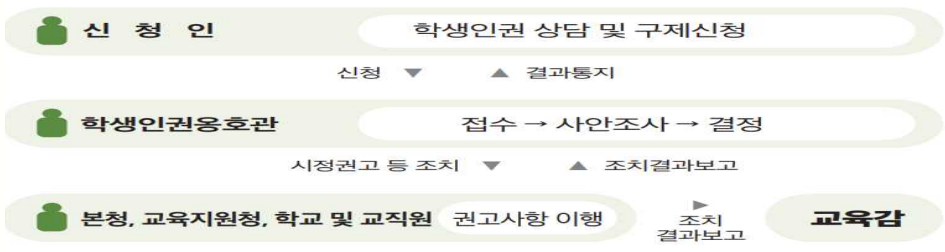
백신중학교 생활안전부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생의 인권보호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을 실현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0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하고 동년 10월 5일 공포·시행하고 있는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규범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언어, 용모, 장애,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습권, 안전권 등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생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해 존중할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통해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 절차 흐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신청 방법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관할지역	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부천 군포의왕 광명 김포 시흥	고양 파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남양주 가평 포천
전화상담	031-820-0632	031-820-0633	031-820-0634
방문상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실		
구제신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https://edup.goe.go.kr/shr/shrMain/main.do)		

※ 전화 및 방문상담 이용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본교는 학교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 갈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 신 중 학 교

학생인권옹호관 홍보 리플릿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학생인권' 누구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의 침해예방과 상담·구제를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화 상담

안양,과천,안산,화성,오산,
군포,의왕,부천,광명,김포,시흥
031-820-0632

고양,파주,동두천,양주,연천,
의정부,구리,남양주,가평,포천
031-820-0633

수원,평택,안성,성남,용인,
여주,이천,광주,하남,양평
031-820-0634

방문·온라인 상담

방문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3층
306호 학생인권담당실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경기학생인권의광장 검색

학생인권옹호관▶인권상담▶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서 작성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백신중학교 예체능부(보건실)

1. 성희롱 정의 및 유형

가.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한 성희롱 개념을 지침에서 명시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나.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1)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 매체(카톡, 블로그 등) 포함)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피해 상담

가.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성폭력의 유형

강간(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다.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 전문기관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전화번호	상담가능시간	홈페이지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http://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경기센터) http://www.ky1366.or.kr/
학교폭력·성폭력신고	117	24시간	http://www.safe182.go.kr/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031-708-1375~6	24시간(분당차병원)	http://www.sunflower1375.or.kr/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031-816-1375	24시간(명지병원)	http://www.gnwsunflower.or.kr/
한국 성폭력 위기 센터	02-883-9284	(평일) 10:00~17:00	http://www.rape119.or.kr/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평일) 09:30~17:00	http://www.womenlink.or.kr/
탁틴 내일	02-3141-6191	(평일) 09:00~18:00	http://www.tacteen.net/

3.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피해자 지원센터

가.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 디지털 성폭력 가해 행위별 유형

유형	성격	예시
촬영	· 설치형/직접 촬영형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직장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
유포	·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 · 본인이 동의하여 촬영한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 포함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 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없이 유포
재유포		·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유포협박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여인과 결별 후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통/소비	·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음란물 유통 처벌
디지털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 · 게임 내 성희롱 · 단톡방 내 성희롱

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2021. 7. 8.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MOU 체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 수사 연계 지원
-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동의 촬영물, 성착취물, 성적 사진 합성물 등의 유포 차단하며, 수사, 상담 기관에 신속하게 연계
- 사안 발생 인지 즉시 센터 신고를 통해 사안 해결 공동 대응 지원

순	구분	기관명	연락처	비고
1	유선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	주중 9시~18시
			지역번호+1366	18시 이후
2	온라인	홈페이지	https ://gwff.kr	
		피해상담 카카오톡,인스타그램,트위터 아이디	031cut	
		피해상담 메일주소	031cut@gwff.kr	

4. 성매매의 정의, 신고요령

가.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의 몸과 성적 행위를 얻기 위해 돈뿐 아니라 음식, 잠자리, 재화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과정에서 거래되는 것은 성교 행위뿐 아니라 성적인 대화, 스킨쉽 등 성 행동과 폭력적인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 매매 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체성과 인간성을 부정하는 인격적 비하와 지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단순히 돈을 매개로 한 교환이 아니라 당사자의 인격과 몸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권침해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나. 성매매 신고요령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무차별적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으로 성매매 유인을 당하고 있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는 유인행위만으로도 처벌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전화 및 사이트	도움 받는 내용
112(경찰청)	모든 범죄 행위 신고 가능
1388(청소년 상담전화)	성매매 피해 발생하였을 때, 가출 청소년 도움이 필요할 때,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등 위기상담과 필요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 구조도 시행
1366(여성긴급전화)	여성이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안내와 상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관련된 상담과 신고접수, 경찰청으로 바로 연결
www.safe182.go.kr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성매수 유인행위가 있을 때 캡처하여 신고

5. 2차 피해의 정의 및 유형

가. 2차 피해의 정의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인, 조력자 등)이 1차 피해 이후 문제제기 및 사건 처리 과정과 이후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업무상 입는 피해를 말합니다.

나. 2차 피해의 유형

- 피해자임을 이유로 또는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
- 피해자의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 및 필요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사건 은폐, 방치, 축소, 지체, 피해자 보호조치 미실시)
- 피해자 등에 대하여 조사과정이나 조직 생활에 있어 재차 성희롱적 언동을 하거나 의심, 비난, 따돌림, 폭언,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비밀누설,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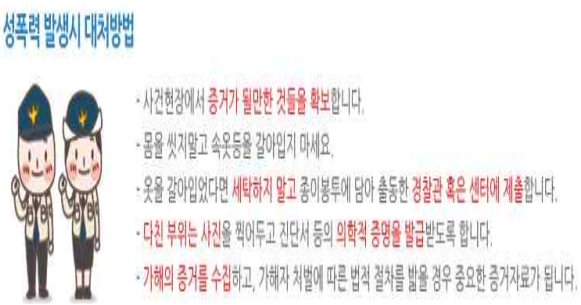
6.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異姓)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준비하고 있다가 계기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7. 성폭력 발생 시 부모의 대응 절차 및 유의 사항

부모의 대응 절차(우선순위 및 시간대별)	부모의 유의 사항
• 자녀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혹은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을 한다. • 자녀의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112)이나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한다. •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존한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48시간 이내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병원 방문)  • 학교에 연락한 후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 및 배려를 요청한다. • 사건 수사, 민사 소송 등 법적 문제, 자녀 치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 자녀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 자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믿어주고 감싸고 보호해 준다. •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안심시킨다. • 부모가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 • 부모의 미흡한 대처로 수사 및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기관을 통한 의료 및 상담 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자녀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지 않는다. 어린 아동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행동으로 자신에게 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피해 사실에 대해 자녀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를 비난하는 언행을 삼간다. • 의문이 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성긴급 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혹은 ONE-STOP 지원센터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 가해자의 협박, 합의 종용 등 증거 자료를 수집, 녹취한다.

8. 음란물 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일

음란물을 보게 되면 성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거나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보면 만지고 싶고 실제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 시간을 주세요.

❖ 컴퓨터는 거실 등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음란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 음란물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혹시 경험하게 될 기회가 있더라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불법 음란물의 장면이 현실과 왜곡된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